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Thailand Non Tariff Barriers Issue

태국,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 요건 설명 고시 (2024년 8월 9일 시행)



태국 식품의약품청, 사전포장식품의 라벨 표시에 대한 안내 고시

태국 식품의약품청은 「사전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제450호)」를 설명하는 식품의약품청 고시(원문)를 공포함. 해당 규정은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식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와 라벨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해당 고시는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됨**

1. **배경** : 2024년 6월 19일, 태국 공중보건부는 사전포장식품의 표시 규정을 개정한 「[사전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제450호\)](#)」를 발표함. 공중보건부는 사전포장식품의 라벨 표시에 대한 코덱스 표준(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s-CODEX STAN 1-1985 (Rev. 1-1991))을 적용하여 태국에 유통되는 사전포장식품에 대해 명확한 라벨링 요건을 규정함. **식품의약품청 고시**는 공중보건부에서 발표한 라벨 표시 규정의 대상 식품, 용어의 정의, 면제 식품, 라벨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화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 라벨 세부사항 표시

구분	내용
(1) 식품명	- 공중보건부 고시(제450호)의 제14조에 제시된 식품명 분류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함 - 일반 식품명(Generic Name) : 식품의 기본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이름. 예를 들어 '밀가루', '설탕', '소금' 등과 같이 제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내는 이름을 사용 - 고유 식품명(Brand Name) : 특정 브랜드가 사용하는 상표명, 예를 들어 '코카콜라(탄산음료)'와 같이 표기함 - 기능적 식품명 : 식품이 특정 기능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을때 사용되는 이름, '저지방 우유', '글루텐 프리 빵' 과 같이 제품의 건강 또는 영양적 특성을 강조 - 글자는 공간의 크기에 비례하며, 앞쪽이나 주요한 부분에 위치하여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함 - 라벨 면적이 35 cm² 이상의 경우, 글자 크기는 2mm 이상 - 라벨 면적이 35 cm² 이하의 경우, 글자 크기는 1mm 이상

구분	내용
(2) 식품 일련번호	- 식품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함(태국 FDA에 등록 후 발급받아야 함) 1)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의 숫자를 사용해야 함 2) 식품일련번호의 프레임은 2mm 이상이어야 하며, 색상은 배경색과 대비되어야 함 ※ FDA 일련번호: 온라인 신청 시스템(스카이넷) 또는 FDA, 지방 공중보건부에 신청
(3) 생산자, 포장업체, 수입업체의 명칭과 소재지	1)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체” 또는 “생산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며 명칭과 소재지를 표시해야 함 2) 포장업체의 경우 “packer” 또는 “packed by”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며, 명칭과 소재지를 표시해야 함 3) 수입제품은 “importer” 또는 “imported by”라는 단어와 함께 수입업체의 명칭과 소재지, 제조국을 표시해야 함
(4) 미터법에 따른 순중량	- 미터법에 따른 순중량을 표시해야 함 1) 고형식품은 순중량을 표시해야 함(단,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총 개수를 표시함) 2) 액체식품은 순부피로 표시함 3) 반고체, 반액체 또는 다른 특성을 가진 식품은 순중량 또는 순부피로 표시할 수 있음 4) 주요 성분은 비율 순으로 작성해야 함(내림차순) 5)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식품에는 “식품가공 전용 원료입니다” 또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구가 표기되어야 함 (※ 미터법에 따른 순중량 표기에 관한 상세사항은 원문 별첨 2 참고)
(5)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을 위한 주의사항 문구 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할 수 있음 등의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위치가 명확해야 하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함 (신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조개류 및 조개류 제품, 오징어 및 오징어 제품
(6) 식품첨가물	1) 첨가물의 기능(예: 보존료, 착색료)과 함께 화학적 명칭이나 국제번호체계에 따른 INS 번호표시 * 예:보존료(소르빈산 칼륨), 착색료(INS 102) 2) 인공감미료의 경우 “식품첨가물”로 표시할 수 있음 (※ 식품첨가물 사용 및 표기에 관한 상세사항은 원문 별첨 3 참고)

2) 기타

- 위반시 조치사항: 3만 바트 이하의 벌금
- 라벨링 표시 면제 식품: 신선한 과일, 조개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품,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식품 등

3. 시행일 : 2024년 8월 9일(식품의약품청 고시 시행일)

(단, 공중보건부 고시(제450호)는 2024년 7월19일부터 시행되며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짐)

※ 관련 기사: [\[태국\] 사전 포장 식품 표시 규정 개정\(2024년 7월 19일 시행\)](#)

출처

태국 FDA, เดือน ศ.พ.แจ้ง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ว่าด้วยการแสดงฉลากของอาหารในภาชนะบรรจุ, 2024.08.09